

부산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가합47348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변론 종결2021. 11. 10.

판결 선고2022.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0. 4. 25.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의 자녀들이고, 피고(E생)는 D와 F의 손자이자 원고들의 조카이다.

나. 피고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D와 F 밑에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동거하거나 조부모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여 왔다. D는 2007. 10. 5. 피고가 자신과 F을 돌아가실 때까지 보필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등기부상 별지 목록 제3,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제8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은 피고가 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머지는 피고가 제3자 또는 D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4. 25. 원고들 및 피고의 부(父) G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합의서(갑 제2호증)

D 할아버지께서 피고에게 증여 및 친족간 매매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할아버지의 뜻과 가족간 회의를 통하여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분을 나눠서 균등분배키로(각25%) 합의한다.

<분배받을자 명단>

G(주민등록번호) (서명)

원고 A (주민등록번호) (서명)

원고 B (주민등록번호) (서명)

피고 (주민등록번호) (서명)

2020. 4. 25.

작성자 피고(서명)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0. 4. 25.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어려서부터 D와 같이 생활하며 조부모에 대한 간병과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하였고, D는 2007. 10. 5. 자신과 F에 대한 병원비 내지 부양비로 사용하라며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갑자기 집안 어른인 원고들이 찾아와 합의서 작성이 D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서 피고를 기망하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포함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원고들에게 분배하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박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의 기망에 의해 피고가 착오를 빠진 상태에서 또는 원고들의 강박에 외포되어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합의서는 제 뜻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는 주장 자체로 이 사건 합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들이 'D의 뜻'에 관해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비록 D가 현재는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3~5일 전 원고 A와의 통화에서는 '피고에게 너무 몰아준 것을 후회한다. 원고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D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이 D를 봉양하는 등 D의 자녀들인 원고들보다도 더 D와 가까이

지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런 피고가 원고들 때문에 D의 의사를 착오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④ 피고는 '상황이 정신없어서' D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자신이 직접 매수한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합의서에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자신이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들이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합의서 내용을 착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박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피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만 33세의 성인 남성이었는바, 원고들이 피고보다 어른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강박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 B를 찾아갔고, 찾아간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신문에서 '할아버지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대해 동의를 못하시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원고 B를) 달래드리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강박당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다면 먼저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원고 B의 마음을 달래주러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를 강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정민

판사강윤진

판사전유상

별지